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3월 18일

제안자 : 장준호 의원의

제안이유

- 동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고 조례 시행일
부터 적용토록 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2005년 1월 1일부터 동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칙
조항을 삭제함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
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</p>	<p>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·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)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,000원을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급시기)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급시기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부 칙</p>	<p>부 칙</p>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>..... 시행한다.</p>